

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/6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 12. 6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사업참여 주체 또는 유관단체 등에 공동이용시설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및 관리위탁, 사용료 감면에 관한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도시재생사업에서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의 정의 및 범위 규정(안 제3조)
- 나. 도시재생사업에서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신설(안 제3조의2)
- 다. 도시재생사업에서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조항 신설(안 제3조의3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- (1)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의 2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3조
- (2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, 제27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3조, 제19조의5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.

다. 기타

- (1) 산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2. 10. 25. ~ 11. 14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, 제3조부터 제3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공동이용시설) 이 조례에서의 공동이용시설이란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,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관리사무소, 경비실, 보안·방범시설 등 주민 안전 및 공동 관리에 관한 시설
2. 운동시설, 체력단련시설, 편의시설, 휴게시설 등 주민 복지 증진 시설
3. 공연시설, 전시시설, 문화창작소, 독서실, 작은 도서관 등 문화·여가 시설
4. 쓰레기·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 시설
5. 공동작업장, 공동판매장, 공동회의실 등 공동 활용 시설
6. 마을 카페 등 도시재생구역의 경제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
7.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시설 중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인정하는 시설

제3조의2(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

1.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·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
2. 도시재생(현장)지원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
3.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법인·단체 등으로서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

③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다른 법인·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인·단체 등에게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, 사용·수익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,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조의3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)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“공익 목적의 기준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.

1.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
2. 교육, 복지,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
3.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
4.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·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해 육성된 단체

2. 도시재생(현장)지원센터
3.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
4.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제3호(정의)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3조제5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----- ----- 〈신설〉	삭제 제3조(공동이용시설) 이 조례에서의 공동이용시설이란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,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1. 관리사무소, 경비실, 보안·방범시설 등 주민 안전 및 공동 관리에 관한 시설 2. 운동시설, 체력단련시설, 편의시설, 휴게시설 등 주민 복지 증진 시설 3. 공연시설, 전시시설, 문화창작소, 독서실, 작은 도서관 등 문화·여가 시설

<신설>	4. 쓰레기·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 시설 등 환경개선 시설 5. 공동작업장, 공동판매장, 공동회의실 등 공동 활용 시설 6. 마을 카페 등 도시재생구역의 경제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7.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시설 중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제3조의2(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 1.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·마을관리협동조
-------------------	---

합 등 도시재생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

2. 도시재생(현장)지원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

3.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법인·단체 등으로서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

③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다른 법인·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인·단체 등에게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,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,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〈신설〉

제3조의3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)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“공익 목적의 기준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.

1.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
2. 교육, 복지,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
3.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
4.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·마을관리협동조합 등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해 육성된 단체
2. 도시재생(현장)지원센터
3.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

<u>제3조 ~ 제14조(생략)</u>	4.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 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 제4조~제15조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□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(시행 2022. 6. 10.)

제30조의 2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2.>

1. 도시재생활성화지역

2.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

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,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(시행 2022. 2. 18.)

제3조(공동이용시설의 종류)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“놀이터, 마을 회관, 공동작업장,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”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19. 11. 26.>

1. 놀이터, 마을회관,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

2.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·세탁장 등 공동작업장, 화장실 및 수도

3. 어린이집· 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

4. 마을방송국· 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

5. 마을기업· 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
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(시행 2022. 6. 29.)

제20조(사용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4, 2014. 1. 7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2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
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<신설 2015. 1. 20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
<신설 2015. 1. 20.>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 <신설 2021. 4. 20.>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4. 20.>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. 20.>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 4. 20.>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[시행 2022. 6. 29.]

제13조(사용허가의 방법)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,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(이하 “지정정보처리장치”라 한다)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·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8. 4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2. 4. 20.>

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,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자를 낙찰자로

한다. <개정 2014. 7. 7., 2016. 7. 12., 2022. 4. 20.>

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8. 4., 2013. 6. 21., 2014. 7. 7., 2015. 7. 20., 2016. 7. 12., 2018. 1. 9., 2018. 12. 4., 2020. 12. 22., 2022. 4. 20., 2022. 6. 28.>

1.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법인·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
2. 일단(一團)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 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3. 청사(廳舍)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4.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5.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
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 2.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 정도,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 3.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,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